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0
----------	-----

제출년월일 : 2016. 2. 4.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1. 제안이유

현재 매우 간략히 되어 있는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중 각 해당 조문을 신설·구체화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율방범봉사대의 목적을 구체화(제1조)

나. 제2조(정의), 제3조(설립 및 등록), 제4조(조직 및 구성), 제5조(임무), 제6조(활동범위), 제7조(경비 지원 등), 제8조(지도 및 감독), 제9조(교육), 제10조(포상) 및 제11조(준용) 등 기존 2개 조문(목적, 운영비지원 등)에서 11개 조문으로 신설·구체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2. 24. ~ 2016. 1. 13.) 결과

- 입법예고는 2015. 12. 24.부터 2016. 1. 13.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경비 지원 등) 제2항의 방법대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예산 지원 차감 또는 중단” 시에 “등록의 취소 및 등록취소 후 재등록 요건 등이 포함된 조항” 추가 [수서동-19669(2015.12.30.)]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취소”는 주민자율방범대의 운영(실적)에 따른 감독 및 지도점검의 결과에 해당되어 동 개정안 제8조 제3항에 “구청장은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요건 등은 제2조(정의)와 같이 관할 동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반영 하였습니다.

당초 개정안	변경 개정안
<p>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방법대의 방법일지 작성 및 활동 실적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8조 ①·②은 현행과 같음</p> <p>③ 구청장은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 제7조제2항제1호 : 3개월 이상 방법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관할 동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자율적인 방범 활동을 하는 단체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등록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설립 및 등록) ① 방범대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른 방범대 설립 및 등록 신고서를 해당 동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등

제하고 설립 등록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방법대의 대표자는 방법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방법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내에서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방법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이하 “방법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무) ① 방법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항
4.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구민 보호 및 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6조(활동범위) 각 방법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법대의 자율방법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간식비
2. 방법초소 운영비(초소 난방 유류비, 초소 수리비 등)
3. 피복 및 순찰장비 구입비
4. 순찰차량 유류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법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차감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법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방법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방법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법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법대의 방법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교육) 구청장은 방법대원에게 방법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방법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방법대 및 방법대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방법대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동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설립 등록증 (제3조 관련)

대표자	① 성명	한글	② 생년월일
		한자	
	③ 주소		
신청내용	④ 명칭		
	⑤ 목적		
	⑥ 초소위치 (연락처 :)		
	⑦ 총 인원		
	⑧ 시설·장비		
⑨ 설립연월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주민자율방범봉사대 등록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 남 구 청 장

주민자율방범봉사대 근무일지 및 차량운행일지

근무일지	2015년 월 일 (요일) 날씨:										결 재	담 당	행정팀장	동 장
근무시간	: ~ :													
근 무 자	근무자 : 명					근무자 : 명								
	A 조					B 조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협 조	봉사대장	인	
※ 일반현황														
대원수			장 비 현 황									활 동 인 원		
계	남	여	가스총	무전기	싸 치 라이트	전자봉	소화기	핸 드 마이크	장 비 보관함	순찰함	비 옷	누 계	금 일	
※ 주요활동 상황														
순 찰 차 량						순찰지역(코스)				주 요 활 동 상 황				
운 전 자			개 인											
차량번호														
유 류 사 용	유 종	휘발유 / 경유 / LPG												
	주유량	ℓ												
	소비량	ℓ												
운 행 내 용	출발	:	도착	:										
	운행 거리 (Km)	전일계												
		금 일												
	누 계													
※ 운영실적														
구 분		청소년 선 도	절도범 검거등	우범지역 순 찰	질서계도, 쓰레기투기	응급 환자 후송등	부녀자, 노약자,장애인등, 안전귀가 조치		캠 페 인 및 기 타					
금일	횟수 (건)													
	인원													
누계	횟수 (건)													
	인원													
※ 동향보고 및 특기사항														

()주민자율방범봉사대 근무조 편성표

구 분	근무조장 (휴대전화)	근 무 조 원	비 고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조항에 대하여 정비 권고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해당(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조항에 대한 정비 권고안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별도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자치행정과 행정6급 양한성(3423-5212)